

# 기안용지

(전화 : 713 - 6156 )

분류기호 문서번호	비무 02124	시행성 특별취급	
보통기호	10.5.3.1.	시	장
수신처 보통기호			
시행일자	1991. 3. 14.		
부 부 기 기 관	기획관리 사무팀장 김재창	713	부서통계 1991. 3. 14. 통재관
기안책임자	김재창	발신일자	
기 수 일 차	기안참조	발 행 일	
배 우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발행
(제 1 인)			
수 신	내부전개		
배 분	같은 선		
1.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칙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			
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 부 : 발령안 1부.			
(제 2 인)			
수 신	공보관		

발행

1991. 3. 14

제 목 : 시 보 개제

1. 부 칙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개제 발행할 것.

참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713 호 1부. 끝.

(제 3.안)

수 신 : 총 무 과 장

제 목 : 훈령 발행

1. 총무01310-173 ( 91. 3. 13 )호와 관련임.

2.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개제 발행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참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713 호 1부. 끝.

7-2

~~서울특별시~~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대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1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여

원인

## 공무원 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공무원 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공무원 연금"을 삭제한다.

제2조중 "공무원 연금 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자금)매점운영을 위한 기본운영자금은 매점 운영실적  
에 의한 잉여금으로 한다.

제4조 ②항중 "내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사무  
계장"으로 "본청과장 및 주무계장급"을 "본청계장 및 6~7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간사는 총무과 소속 6~7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별표2>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기준액

- 1) 판매원: 지방 고용직공무원 1종에 준한다
- 2) 창고관리 및 상품운반원: 지방 고용직공무원 2종에 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총무01310-	(전화: 6245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1. 3	11..	
보조 기관	부시장	전 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결 제 1991. 3. 31. 문 서 통 제 부서장             </div>
	내무국장	<i>[Handwritten Signature]</i>	
	총무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책임자	박우병 <i>[Handwritten Signature]</i>	법무담당관심사관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명의	
세 목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 개정		
(제1안)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같은 전		
1. 매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2.3.31. 훈령			
제570호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의 운영규정을			
별첨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	: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1부. 끝.		
(제2안)			
수신	: 법무담당관		6

7-6

제목 : 갑 을

1.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매점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1부. 끝.

